

大田廣域市第5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議案 番 號	f32
-----------	-----

提出年月日 : 1995. 1. .

提 出 者 : 大田廣域市長

1.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이 條例는 大田廣域市의 新設道路 鋪裝 및 擴張 被服工事に 所要되는 資金의 充當을 爲한 公債發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기 爲하여 1981. 2. 20 制定 하였음.
- 現行 地方財政法 第8條 第2項에 의거 商法 第487條에 地方 債證券의 償還請求權을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 이 條例는 最終(2次) 償還開始日이 1984. 3. 1로 規定하고 있는바 償還時效가 消滅되어 이 條例 目的이 達成되었으므로 廢止코자 함.

2. 參考事項

가. 關聯法規(別添)

- 地方財政法 第8條
-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7條 내지 第20條
- 商法 第479條, 第484條, 第485條, 第487條

나. 公債發行 現況 및 償還開始日

공 채 발 행			공 채 매 출	최종상환 (2차) 개 시 일
권면금액	매 수	금 액(천원)		
계	60,000매	1,200,000		
10,000원권	50,000	500,000	1981. 3. 1	
50,000원권	6,000	300,000	~ 12. 31	1984. 3. 1
100,000원권	4,000	400,000		

다. 現行 大田廣域市 第5回 公債條例 : 別添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재정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20조
2.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제487조
3. 폐지조례(대전광역시 제5회 공채조례)

地方財政法

第 8 條 (地方債의 발행) ① 地方債의 발행, 募集의 價格, 利率의 決定, 證券에 關한 事務程序 및 事務取扱機關은 大體法으로 定ム라.

② 第 1 項의 地方債證 證券發行의 方法에 依한 地方債(이하 "地方債證券"이라 한다)의 發行에 關하여는 商法 第 479 條, 第 484 條, 第 485 條 및 第 487 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경우 商法의 規定중 "社債"은 "地方債證券"으로, "社債擔保"은 "地方債擔保"으로, "債券"은 "證券"으로 보고, 第 479 條중 "記名社債"을 "記名地方債證券"으로, "社債原簿"은 "地方債證券原簿"으로, "存摺"을 "地方自治機關"로 各各 본다.

地方財政法 施行令

제7조 (지방채의 종류등) ① 제8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임무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한다.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등 외국으로부터 차관(원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차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혜에 걸치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조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5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과에 관하여는 또한 같다.

제10조 (지방채증권 등본액) 그 발행금액에 대하여 무한 경우의 경우 지방채증권의 등본액이 지방채증권발행사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한 것을 지방채증권발행사에 기재한 때에는 그 등본액으로서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납입)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조의 납입을 시키야 한다.

②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영외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권위를 할 수 있다.

제12조 (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결의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인원일

제13조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4조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액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서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5조 (기명식·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지방채증권인부)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인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인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인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무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 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이권환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환결된 때에는 그 이권이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개한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외화지방채증권의 득래)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이 환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이 불구하고 기재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 (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商 法

- 第179條 (記名社債의 移轉) ① 記名社債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社債原簿에 記
載하고 그 姓名을 債券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會社其他第三者에 對抗하지 못한다
② 第337條第2項의 規定은 記名社債의 移轉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附註 84>
- 第484條 (受託會社의 權限) ①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는 社債權者를 爲하여 社債의
償還을 發給에 必要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을 權限이 있다
② 前項의 會社가 社債의 償還을 發給할 때에는 遲延없이 그 事實을 公報하고 알고 있는 社債權者
에 對하여는 各別로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境遇에 社債權者는 債券과 相換하여 償還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 第485條 (2以上의 受託會社가 있는 境遇의 權限義務) ① 社債募集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2以上 있을 때에는 그 權限에 對하는 行爲은 共同으로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各會社는 社債權者에 對하여 連帶하여 償還額을 支給할 義務가 있다
- 第487條 (元利請求權의 時效) ① 社債의 償還請求權은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
效가 完成한다
② 第484條第3項의 請求權도 前項과 같다
③ 社債의 利子와 前條第2項의 請求權은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제 13편 건설·주택 대전직할시제5회공채조례

● 대전직할시제5회공채조례 [1981. 2. 20
조례 제1047호]

개정 1981. 9. 30 조례 제1073호

개정 1981. 3. 13 조례 제12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의 신설도로 포장 및 확장 피복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제5회 공채(이하 “공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채 발행 총액) 공채는 총액 1,2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

제3조(공채의 종류 및 가격) ① 공채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하고 권면 금액은 10,000원권, 50,000원권, 100,000원권의 3종으로 한다.

② 권면 금액의 종별 발행 매수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공채의 발행 가액은 권면 금액으로 한다.

제4조(공채매출) ① 공채매출은 1981년 3월 1일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채는 “별표2”공채소화 기준에 의하여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관, 이전등록과 주소지 변경등록, 자동차 검사(감, 을중)시 참가하여 소화한다.

③ 이관, 이전 등록과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소화 기준의 1/2로 한다.

④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채의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공채의 매출과 원리금상환업무는 대전직할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6조(상환재원) 공채의 원금 및 이자는 도시계획세 세입 및 일반 재원으로 상환한다.

제7조(상환방법) ① 공채의 원금은 2년거치후 2년간 매년 공채발행 총액의 2분의 1 해당액을 “별표 1”과 같이 균등 분할 상환한다.

② 시의 재정 형편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상환액을 초과 상환하거나 공채의 전부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원금 상환일은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때의 매출일로 한다.

제8조(이자지급) ①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가산하여 매1년에 권면 금액의 100분의 8의 단리로 계산하고 원금 상환시에 지급하되 소

제13편 건설 주택 대전직할시제5회공채조례

정의 상환기간 만료 이후로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의 재정 형편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기할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가산 지급한다.

제9조(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장소) 공채의 원금 및 이자는 지급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한다.

제10조(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 공채를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없다.

② 오손의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으며 재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채권자는 법원이 채권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공채의 시효) 공채의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부 칙(조례 제 1047)

이 조례는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1073, 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3편 건설·주택 대전직할시제5회공채조례

(별표 제1호)

제5회 도로공채 상환표

(단위 : 천원)

상황년도	상 황 개 시 일	상 환 액		
		계	원	이 자
계		1,440,000	1,200,000	240,000
1차상환 (1983)	1983. 3.1	696,000	600,000	96,000
2차상환 (1984)	1984. 3.1	744,000	600,000	144,000

차주회사: 인태서 주식회사 (사무관장인) 이석기 (인)

제13편 건설 주택 대전직할시제5회공채조례

(별표 제2호)

도 로 공 채 소 화 기 준

(단위 : 천원)

구	분	대 당 규 액	비 고
자 동 차 신 규 등 록	○ 승용(자가용)		
	1,000cc이하	200	
	1,500cc이하	400	
	2,000 -	800	
	2,001cc이상	2,000	
	대형버스	500	
	소형버스	300	
	○ 화물(자가용)		
	1 톤 이하	100	
	2.5톤 이하	200	
	4.5톤 이하	400	
	8 톤 이상	500	
	8.1톤 이상	700	
	○ 영업용		
	버 스	200	
	택 시	100	
	화물 0.5 - 4.5톤	100	
4.6톤 이상	200		

제 13편 건설·주택 대전직할시제5회공채조례

○ 자동차 이관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신규등록의 1/2)

(단위 : 천원)

구	분	대 당 금 액	비 고
자동차이전 등록, 변경 등록(신규 등록의1/2)	○ 승용(자가용)		
	1. 000cc이하	100	
	2. 000cc "	200	
	2. 001cc이상	1,000	
	대형버스	250	
	소형버스	150	
	○ 화물(자가용)		
	1 톤 이하	50	
	2.5톤 이하	100	
	4.5톤 이하	200	
	8 톤 이하	250	
	8.1톤 이상	350	
	○ 영업용		
	버 스	100	
	택 시	50	
화물 0.5 - 4.5톤	50		
4.6톤 이상	100		

○ 자동차검사(갑,을종)

(단위 : 천원)

구	분	대 당 금 액	비 고
자동차검사 갑,을종	○ 승용(자가용)		
	1. 500cc이하	50	
	1. 500cc초과	80	
	○ 버스(자가용)	10	
	○ 화물(-)	10	
	○ 영업용(승용, 화물)	10	

大田廣域市第5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審 查 報 告

1995. 2. .
産業建設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및 提出者 : 1995. 1. 24. 大田廣域市長
- 나. 回附日字 : 1995. 2. 2
- 다. 上程日字 : 第38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1995. 2. 20) 上程
質疑, 審査, 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建設住宅局長 黃 昨 善)

가. 提案理由

- 이 條例는 新設道路 鋪裝 및 擴張工事 所要資金 充當을 위한 公債發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기 위하여 (1981 2.20) 制定하였음.
- 現行 地方財政法 第8條 第2項에 依據 商法 第487條에 地方債證券의 償還請求權을 10年間 行事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바,
- 이 條例에 最終(2次) 償還 開始日을 1984. 3. 1로 規定한 바, 償還時效가 消滅되어 이 條例 目的이 達成되었으므로 廢止코자 함.

나. 主要骨子

- 大田廣域市 第5回 公債條例의 廢止
(施行日 : 公布한 날부터 施行)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류 기 현)

가.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앞의 內容과 같음.

나. 檢討意見

- 今番에 廢止코자 하는 大田廣域市 第5回 公債條例는 大田廣域市의 新設道路 鋪裝 및 擴張 被覆工事に 所要되는 資金의 充當

을 위하여 1981年2月20日 制定한 것으로서 道路公債 最終 償還開始日이 1984年3月1日로 規定하고 있는 바,

- 地方財政法 第8條 2項에 依據 商法 第457條에 地方債 證券의 償還請求權을 10年間 行事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되도

록 規定된 바, 1994年 12月31日字로 償還時效가 消滅되어 條例의 目的이 達成되었으므로 廢止되어야 할 것으로 檢討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없 음

5. 討論要旨

없 음

6. 小委員會 審查內容

없 음

7. 少數意見의 要旨

없 음

8. 審 查 結 果

原案可決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